

2025년 대한컬링연맹 사무처장 채용 공고

대한컬링연맹에서는 체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역량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I. 채용개요

☐ 채용분야

구분	직급	채용인원	주요 업무
정규직	사무처장	1명	대한컬링연맹 사무처 운영 총괄

☐ 근로조건

급여	근무시간	근무장소	비고
내규에 따름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 연맹 사무처(서울 송파) - 대회 개최지 등	최초 3개월 수습기간 평가 후 정규직 임용

☐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사무처운영규정 제10조(자격규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만 60세를 초과하지 아니한 자.
자격 기준 (1개 이상 해당자)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학사 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20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 있는 자. - 학사 학위 없이 관련 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지원법상 단체의 장과 부서단위 책임자(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함. ※ 관련 분야: 스포츠(체육) 분야, 행정 분야, 홍보·마케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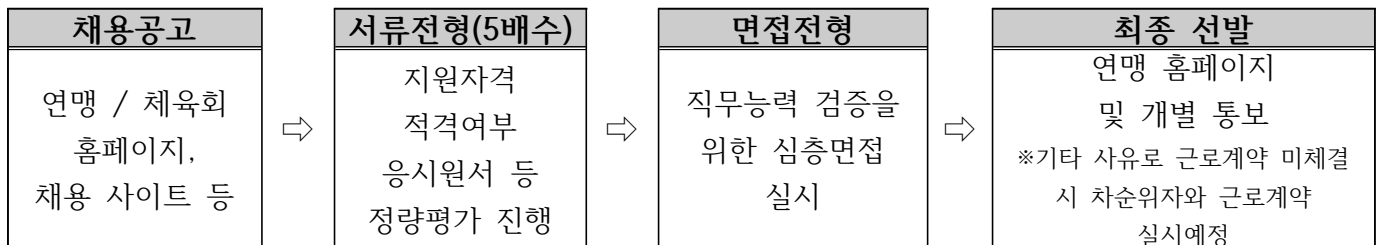
※ 경력관련 유의사항

- 경력(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만 경력으로 인정함. 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 나오지 않는 경력증명서는 불인정함.
- 경력(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의 기간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기간으로 인정함.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담당업무, 근무 기간, 기관장의 직인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수기는 불인정함.
- 지원서에는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경력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 재직 중인 경우 근무기간은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함.

□ 우대사항

대상	우 대 내 역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의 따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가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채용 절차



※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서류전형

구분	평가내용
응시자격 적격여부	■ 적격여부 심사기준: 심사위원 과반 이상 적합으로 판정
자기소개서(20)	■ 서류전형 정성평가
직무수행계획서(35)	
경력기술서(35)	
자격사항(30)	■ 평가 기준에 따른 정량평가(자격 및 경력)
기초역량(5)	■ 평가 기준에 따른 정량평가(영어점수)

○ 면접전형

구분	평가내용
심층면접 (100)	■ 종합적인 인·적성 및 직무능력 평가 ※업무수행능력, 조직발전 기여도, 전문지식, 차별화된 사고력 및 실행력, 태도 등 ■ 다대다 또는 일대다 면접심사위원 심층면접 진행 ■ 직무수행계획 발표

○ 최종 합격자 선정

구분	평가내용				
최종 합격자 선발	■ 합격대상: 면접전형 합격자 ■ 선정방법: 서류 면접전형 반영 비율을 종합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 선정 <table><tr><th>서류점수 반영비율</th><th>면접점수 반영비율</th></tr><tr><td>30%</td><td>70%</td></tr></table>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법: 면접 → 서류 고득점자 순 선발	서류점수 반영비율	면접점수 반영비율	30%	70%
서류점수 반영비율	면접점수 반영비율				
30%	70%				

○ 전형일정(안)

구분	세 부 일 정	비 고
대한컬링연맹 인사위원회 심의	2025. 4월 3주 중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025. 4. 22.(화) ~ 5. 6.(화) 24:00까지	2주
서류전형	2025. 5월 2주 중	1차 심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5월 3주 중	
면접전형	2025. 5월 3주 ~ 4주 중	2차 심사
합격자 발표	2025. 5월 4주 중	
근로 계약	2025. 6. 2.(월)	출근일

※내부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Ⅱ.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제출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서류전형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기술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재직 및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종 자격증 및 어학성적증명서

-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제출기한: 2025. 5. 6(화) 24:00 까지 (이메일 도착시간 기준)
 - 이메일: career@koreacurling.org
 - 기타문의: 02.419.6281

☐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 공무원 건강진단서 1부.
- 징계사실유무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및 증명사진 1장.

Ⅲ. 유의사항

- 지원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전형별 합격자는 유선 또는 문자로 개별통지하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실 경우 채용 종료일로부터 2주 내 담당자 (02-419-6281)에 요청하시면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기일 내 반환신청이 없을 경우 제출하신 서류는 모두 폐기 처리합니다.
-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필수 입력사항의 미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채용 후 수습기간(3개월) 동안 근무평가 후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부규정에 의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집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될 경우 이전 전형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하거나, 채용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컬링연맹 02-419-6281로 문의바랍니다.

[채용직무 설명자료]

주요업무	- 경영기획 · 연맹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행 · 연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관리 및 집행 ·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 등 컬링 유관단체 제안 및 협력 등 - 홍보/마케팅 · 대내외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실행 · 신규 후원사 확보 및 기존 후원사 지속발전을 위한 관리 등 - 체육행정 · 총회, 이사회, 각종 분과위원회 기획 및 운영 · 시도컬링연맹 선수/지도자 소통 및 문제해결 등 · 국제연맹 협력 및 소통 등 - 인사기획 · 조직의 비전과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른 인사전략 수립 및 실행 · 인력운영 효율성 분석에 따른 조직 인건비 운영계획 수립 ·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고 구성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 등	
전형 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채용	
일반 요건	연령	정년 60세 적용
	성별	무관
교육 요건	학력	별도 자격요건 있음
	전공	무관
필요 지식	- (경영기획)중장기 사업별 경영계획, 연간 사업계획 추진 전략, 당해연도 중점 추진과제, 정부정책 · 법규 동향, 유관기관 관리방안, 예산계획에 관한 지식 - (홍보/마케팅) 시장 및 경쟁 상황 파악하기 위한 내외부 환경 분석 및 성과분석 지식 - (체육행정) 국제/전문/생활 체육 분야에 관한 지식, 보조금 관리·운영에 관한 지식 - (인사기획) 전략적 인적관리, 예산 편성에 관한 지식, 업무처리 지침, 인사규정, 근로기준법	
필요 기술	- (경영기획) 기획서 작성 기술, 비지니스 문서 작성 기술, 문제 예측 · 대응방안 기획 기술, 정보수집활용 기술, 관련기관 · 단체 담당자와의 협상 기술 등 - (홍보/마케팅) 기획적 사고, 체계적 사고, 분석적 사고, 창의성, 다양한 의견 경청, 기관 이슈 및 동향에 대한 관심, 편집과 교정의 꼼꼼함 등 - (체육행정) 보고서 작성 및 편집 능력, 규정에 입각한 행정처리, 적극적 문제해결 마인드 등 - (인사기획)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능력, 벤치마킹 사례분석 능력 등	
직무수행태도	스포츠 트렌드 변화에 대한 분석적 검토 자세, 데이터 바탕을 둔 사업운영 목표, 창의적 사고, 논리적/분석적/객관적 사고, 공정성 확보 노력, 고객 지향 태도, 업무 규정 및 일정 계획 준수, 정확한 업무 처리 태도, 타인과 협업자세,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종합적 사고, 원활한 의사소통 태도, 선수 및 참가자에 대한 안전의식, 민원인에 대한 올바른 응대 태도 등	
필요자격	- 공고문 내 응시자격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직업윤리, 조직이해능력	

[채용 결격사유 세부내용]

<대한결링연맹 사무처운영규정 제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정신 질환 및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2024. 12. 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 11.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블라인드 채용 안내]

□ 블라인드 운영 기준

- 모든 채용단계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개인 신상정보 기재 및 언급 일절 금지
 - ▶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역, 종교, 사회적 신분 등
-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역 등 인적사항을 직·간접적으로 기재 또는 언급한 경우 고의 유무, 위반의 경중 등을 불문하고 해당전형 탈락 처리

□ 블라인드 위반 예시

- 학교명,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드러나는 메일 주소 사용 금지

[예시 1] curling@학교명.ac.kr → 블라인드 위반

[예시 2] 생년월일@gmail.com → 블라인드 위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신상정보의 직·간접적 기재 또는 언급 금지

[예시 1] 서울 관악산 소재한 대학 재학 시 → 블라인드 위반

[예시 2] 서울 서초에서 태어난 00년생 김컬링입니다. → 블라인드 위반

[예시 3] 서울시청 00 국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아버지를 본받아 → 블라인드 위반

[예시 4] 남편/아내/형/오빠와 함께 → 블라인드 위반

[예시 5] 행정병(보급병, 통신병, 운전병 등) 으로 복무하며 → 블라인드 위반

- 경력 관련 기관명, 부서명, 전공 및 자격사항 등은 기재 가능, 단 학교, 친분관계, 종교활동 등 신상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 기재 불가

[예시 1] 대한체육회 인사과에서 인사업무 담당을 통해 → 가능

[예시 2] 스포츠경영학 수업(공부)을 통해 → 가능

[예시 3] 홍길동 교수님 지도 하에 → 블라인드 위반

[예시 4] 한국대학교 기독교 동아리에서 회장직을 맡으며 → 블라인드 위반

[서류전형 평가기준]

구분		배점			비고	
응시원서		■ 응시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자기소개서		■ 문항별 성실성·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될 경우 부적합으로 판단되어 서류전형 탈락 처리 - 타인의 자기소개서 활용한 경우 - 회사명을 잘못 기술한 경우 -평가위원 과반 수 이상이 성실도 미흡 및 블라인드 원칙 위반 등의 사유로 부적합 하다고 판단할 경우	20			
직무수행계획서		■ 채용분야에 대한 이해도, 업무수행 계획, 경험, 전문성 등 평가	35			
경력기술서		■ 지원 직무와 연관된 업무 성과 및 객관적 자료 등 평가	35			
자격사항	경력	1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	20	*중복 시 배점이 높은 1개만 인정		
		1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	16			
		10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	12			
		7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	8			
		- 관련분야: 체육/스포츠 분야, 행정 분야, 홍보·마케팅 분야 - 경력(재직)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증빙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기간이 상이할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기간으로 인정				
	IT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5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정보처리산업기사	3			
		- 컴퓨터활용능력 3급, 정보처리기능사	2			
	스포츠 (체육)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5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3			
기초역량	영어점수	TOEIC	TOEIC Speaking	OPIc	-	*배점이 높은 1개만 인정 *2년 내 유효한 성적
		900점 이상	180점 이상	AL	5	
합계		125점				

[면접전형 평가기준]

구분	내용	배점
업무수행능력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 신속·정확도	20점
조직발전 기여도	창의력, 의지력, 적응력, 발전가능성 등	20점
전문지식	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	20점
차별화된 사고력	문제에 대한 예방 및 해결방안 도출 능력 등	20점
태도 및 성실성	업무에 대한 소양 및 품행, 직업윤리, 성실성 등	20점
합계		100점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예비합격자 : 해당전형 비합격자로 합격기준 충족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운영
 - 서류전형 예비합격자 수 : 채용인원의 5배수
 -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수 : 채용인원의 3배수
- 전형별 예비합격자 결정방법
 - 서류전형 추가합격
 - ▶ 면접전형 전일 16시까지 응시포기 또는 불참 통보 시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예비합격자 총원
 - 면접전형 추가합격
 -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부적격 판정,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예비합격자 총원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 채용비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를 말한다.
 -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 해당 피해자를 즉시 채용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 ※(예시)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 단계 피해시)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서류 단계 피해시)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불가능하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한다.

※(예시)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최종 면접 단계 피해시)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서류 단계 피해시)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 피해자 구제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 그룹이 특정·확정될 경우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가 확정·퇴출 전 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 실시한다.